■ 공연법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5. 4. 23.>

청소년 유해 [ ] 공연물 [ ] 선전물 확인요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
요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 :)	

요청내용	공연자의 명칭	대표자 성명
	공연제명	공연물의 종류
	공연장소	공 연 기 간

「공연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([ ] 공연물 [ ] 선전물) 확인을 받고자 요청합니다.

년

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가. 각본·가사·악보·공연프로그램 1부(공연물의 경우에 한합니다) 나. 해당 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(선전물의 경우에 한합니다)	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

처 리 절 차

요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심 의	→	결 정	→	확인서 발급

요청인 처 리 기 관 : 영상물등급위원회(공연담당부서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